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 2010년 달라지는 상속·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규정이 올해도 개정되었다. 이번호에는 2010년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 1.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이번 개정으로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작년까지는 피상속인이 기업을 영위한 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인정했으나, 2010. 2. 18일 이후부터는 60% 이상이거나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으로 인정된다.

### 2. 연부연납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가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신고기한까

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상속·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무신고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의 신청을 허용함에도 신고하고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신고자가 무신고자보다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생겼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의 신청을 허용했다.

### 3.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 범위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는 계부와 계모 및 자녀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졌다(다만,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1,500만원 한도임. 종전과 동일). 종전에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서 계부·계모가 제외되어 기타친족으로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었다.

〈표 1〉 연도별 기업상속 공제요건의 완화내역

시망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2008. 1. 1 이후	15년 이상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2009. 1. 1 이후	10년 이상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영업기간 중 80% 이상 재직
2010. 2. 18 이후	10년 이상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① 또는 ② ① 영업기간 중 60% 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

〈표 2〉 연도별 기업상속 공제금액 확대내역

시망일	기업상속공제액	공제한도액
2007. 12. 31 이전	기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2008. 1. 1 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기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 시 해당가액)	30억원
2009. 1. 1 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기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 시 해당가액)	기업영위기간별 – 10년 이상 : 60억원 – 15년 이상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그러나 최근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고, 소득세법상 부양가족공제 적용 시에 계부·계모도 직계존비속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세법간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등 계부·계모를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 4. 증여세의 전자신고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증여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9년 11월 1일 이후 증여한 분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 5. 국세의 신용카드납부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야기해 본다. 얼마 전부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종전 보다 신용카드 납부범위를 확대시켰다.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납부대상자도 법인은 제외였으나 법인도 가능하도록, 대상세목도 일부 세목만 적용되었으나 모든 세목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 

■ 문의 : (02)552-6100 대현회계법인